#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8월 26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8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8년 9월 9일) 상정

○ 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8년 9월 9일)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 제안이유

○ 현재 운영중인 장학사업은 시 기금의 출연에만 의존하는 관계로 재원 확충과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뜻있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 하에 장학 재원의 확충 및 사업의 확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민·기업·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 중심의 장학재단을 설립·육성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천장학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고,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함.(안 제4조)

○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와 감사 2명을 두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재단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우수교사 연수 및 연구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6조)

○ 재단의 재산은 시의 출연금, 주민 및 단체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금, 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7조)

○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으며, 재단의 운영경비는 재단의 재산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익금 등으로 충당함.(안 제8조 및 제9조)

○ 공유재산이 무상대부, 행정지원 및 공무원 파견 및 해산 시의 잔여재산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3. 관련현황

### 가. 부천시장학기금 적립 및 운영 현황

(단위:천원)

| 총 조 성 액 | | | 총 지 출 액 | | | 기금총액 |
|---|---|---|---|---|---|---|
| 소 계 | 출연금 | 이자수입 | 소 계 | 경상경비 | 장학금지급 | |
| 5,829,127 | 3,940,000 | 1,889,127 | 1,794,716 | - | 1,794,716 | 4,034,411 |

### 나. '98년도 이후 부천시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현황

| 지급액(천원) | 선 발 인 원 | | | | 비 고 |
|---|---|---|---|---|---|
| | 계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 | |
| 1,794,716 | 2,400명 | 719명 | 1,475명 | 206명 | |

※ 2005년도 부터는 중학생 제외(의무교육)

### 다. 부천시 관내 민간단체 장학기금 현황

| 연번 | 단 체 명 | 대표자 | 주 소 | 기금조성액 (천원) |
|---|---|---|---|---|
| 계 | **11개 장학회** | | | **970,977** |
| 1 | 중구장학회 | 원종호 | 원미구 원미동 71 | 340,000 |
| 2 | 소사구 장학회 | 이종인 | 소사구 심곡본동 562-183 힐탑빌라 1-205 | 157,477 |
| 3 | 호남향우회 | 최선규 | 원미구 역곡동 221-13 | 100,000 |
| 4 | 심곡2동 새마을장학회 | 이희태 | 원미구 심곡동 135-3 | 75,000 |
| 5 | 성곡장학회 | 정예근 | 오정구 여월동 10-36 | 60,500 |
| 6 | 조향장학회 | 이해우 | 원미구 원미1동 52-4 | 55,000 |
| 7 | 심곡1동 장학회 | 조승식 | 원미구 심곡1동 367-2 | 45,000 |
| 8 | 범박장학회 | 강귀남 | 소사구 범박동 154-2 현대홈타운1단지 106-1702 | 45,000 |
| 9 | 심곡3동 새마을장학회 | 오세완 | 원미구 심곡동 352-3 | 43,000 |
| 10 | 원미1동 장학회 | 김영백 | 원미구 원미1동 99-2 | 30,000 |
| 11 | 고강장학회 | 변호부 | 오정구 고강동 246 | 20,000 |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내 용 | 답 변 내 용 |
|---|---|
| ◦ 현재 운영중인 민간 장학회 대표자들과 통합을 논의한 바 있는지? | ◦ 일부 대표자와 논의한 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임. |
| ◦ 개별 장학회는 그 취지가 따로 있다. 통합에 동참하겠는가? | ◦ 모두 동참하지 않을 것임. 원하지 않으면 무리해서 통합하지 않을 방침으로 개별 장학회 의견을 최우선시 하겠으며, 부천장학재단은 기금출연금과 자발적인 시민참여(기탁)에 의해 운영될 것임. |
| ◦ 목표인 100억을 3년이내에 조성할 수 있겠는가? | ◦ 출연금 및 시민모금을 활성화 할 계획이며,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적은 금액이라도 쉽게 기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음. |

| 질 의 내 용 | 답 변 내 용 |
| --- | --- |
| ◦ 사무국 운영 방침은? | ◦ 운영비 과다지출은 문제가 있으므로 공무원이 운영할 계획임. |
| ◦ 장학회 육성을 행정기관이 주도하면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모금 운동이 위축될 것이다. 관주도의 장학재단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 ◦ 장학재단은 공공성과 공신력이 있어야 기탁자가 증가하는 등 장학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봄. |
| ◦ 장학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많은 권한을 재단정관에 위임하고 있는데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 아닌가? | ◦ 이사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정관을 만들겠음. |
| ◦ 단기적으로는 공무원이 운영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될 것이다. 재단설립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 ◦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설립시 충분히 검토하겠으며, 기존 운영사례를 비교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음. |

## 5.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없음

나. 찬성토론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 7. 소수의견 요지

○ 관주도의 장학재단 설립은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모금운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장학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그 권한이 너무 정관에 위임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과 검토 후에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함.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의 안 번 호 | 제291호 |
|---|---|
| 의 결 년월일 | 2008. 9. 10 (제146회) |

제출년월일 : 2008. 8. 26.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 제안이유

○ 현재 운영 중인 장학사업은 시 기금의 출연에만 의존하는 관계로 재원 확충과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뜻있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 하에 장학 재원의 확충 및 사업의 확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민·기업·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 중심의 장학재단을 설립·육성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부천장학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고,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함.(안 제4조)

○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재단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우수교사 연수 및 연구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6조)

○ 재단의 재산은 시의 출연금, 주민 및 단체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금, 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7조)

○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으며, 재단의 운영경비는 재단의 재산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익금 등으로 충당함.(안 제8조 및 제9조)

○ 공유재산이 무상대부, 행정지원 및 공무원 파견 및 해산 시의 잔여재산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부천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부천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구성) ① 재단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회에는 시 공무원 1명과 부천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부천시의원 1명을 포함한다.

④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6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우수교사 연수 및 연구비 지원
3. 교육·문화예술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에 대한 연구비 지원
4.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주민 및 단체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금
3. 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출연금) 시장은 재단 설립 목적의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9조(운영경비)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재단의 재산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및 장기차입 등 처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 중에서 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제15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재단이 설립된 날부터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부천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천시 장학기금은 재단에 귀속한다.

(폐지 조례)

# 부천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1996. 07. 18 조례 제1430호
개정 1999. 02. 18 조례 제1628호
개정 2003. 01. 15 조례 제1901호
개정 2005. 01. 13 조례 제2053호
개정 2007. 01. 09 조례 제219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을 말한다.
2. 삭제<2005.01.13>
3. “고등학교”라 함은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개정 2007.01.09>
4.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교”라 함은 학력이 인정되는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교를 말한다.<개정 2007.01.09>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장학금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도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01.09>

1. 삭제<2005.01.13>
2.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입학성적 또는 전학기의 성적우수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개정 2003.01.15>
3.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입학성적이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전학기의 학점을 100분율로 환산하여 80점이상에 해당하는 자<개정 2003.01.15>
4. 기능 및 예·체능계열의 학생으로서 전학년중 도단위 대회에서 3위이내의 입상 또는 전국단위 대회에서 5위이내의 입상경력이 있는 자<개정 2003.01.15>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및 기타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100분의 50 이내로 동장 또는 청소년생활시설에서 보호를 받는자중 시설장이 추천하는 자<개정 2003.01.15>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개정 2007.01.09>

제4조(장학생의 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매학기 개시전에 학교장, 교육장 또는 대학장(총장포함)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3.01.15>

②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동장 또는 시설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을 경유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3.01.15>

제5조(심의위원회) 장학생의 선발, 장학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부천시장학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장학생의 선정) ①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개시후 20일이내에 장학생을 선정한다.<개정 2003.01.15>

②장학금지급대상인원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장학생의 자격상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01.09>
1.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부천시 이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때
3. 질병 또는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4. 장학금지급 결격 사유로 인하여 추천권자의 정지신청이 있는 때
5. 장학금 사용기준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확고한 사명감으로 학업에 충실하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사용기준) 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01.09>
1. 입학금, 수업료, 기타 학교 납부금과 교재대
2. 학용품비 및 통학에 소요되는 교통비

제11조(장학기금의 재원) 장학기금의 재원은 매년 시장이 이를 예산에 편성하고 지원되는 장학금은 기금의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한다.<개정 2003.01.15>

제12조(위탁운영) 시장은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01.09>

제13조(결산 및 검사 등) 위탁받은 재단법인 또는 민간단체는 장학금 지급 후 1월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6.07.18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1.15 조례 제19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조례의 장학기금에 속하는 채권과 기타 권리·의무는 부천시장학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한 장학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01.13 조례 제2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09. 조례 제2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